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88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 나.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

#### 다.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및 관련 서식 삭제(안 제8조)

라. 시행규칙 규정 삭제(안 제10조)

마.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수입 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의 제3조는 수수료 등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계되어 영등포구의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2에서도 “수수료는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는 규정도 정비 대상으로, 부칙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조례상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라 납부 방법에 변화가 없을 것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기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어 실효가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려는 것임.

####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